

—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제18회임시회사화산업위원회
1996년 10월 12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년 8월 29일
- 나. 청 원 인 :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장 전 창 근
- 다.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임 경 만 의원
- 라. 회부일자 : 1996년 10월 5일 회부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마. 상정일자 : 1996년 10월 12일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0.12) 상정·질의·토론·의결

2. 청원사유 및 내용

-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부제 완화
 -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
 -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과중
 - 각종 교육, 훈련, 길·홍사 등 운행중단 사례 빈번
- 생계유지비 마련을 위한 무리한 운행 우려
- 현행 6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부제를 자율부제로 조정

3. 시의원 소개의견

-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 해소와 승차난 해소,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율부제 운명이 바람직.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택시부제 운영은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요령 (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 1995. 7. 13)에 의하여 택시의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세를 두어 정기적으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건강 유지는 물론 차량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임.
- 개인택시를 자율부제로 할 경우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차량의 정비소홀과 운전자의 건강악화등으로 교통사고 요인의 증가도 우려됨.
- 그러나, 본 청원은 개인택시의 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개인택시부제의 자율화를 위한 내용인만큼 현실적인 입장에서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청원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담당부서에서 제반문제를 종합 분석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청원 채택 (자치단체장에 이송)

8. 의 건 서 (별첨)

개인택시자율부제 청원에 대한 의견서

○ 청 원 인 :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장 전 창 근

○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임 경 만 의원

○ 청원에 대한 의견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골자는 현행 6부제로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부제를 자율부제로 완화함으로써 자가용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임.

택시부제운영의 근본 취지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하여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하는 제도로써 이를 자율화할 경우 운영난을 호소하는 현실속에서 그 이행여부가 우려되나, 개인택시 부제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청원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본 청원의 내용이 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